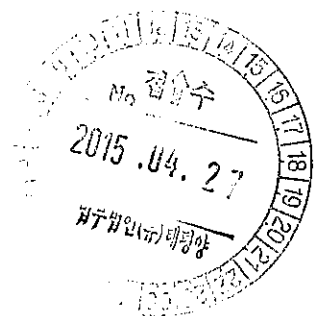


2014두15559

판 결 서

대 법 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4두15559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대표자 원장 김흥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김승호, 남문기, 조무연, 박재영, 김태균

피고, 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경정 전 : 서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정호, 강현구, 심필선, 황인욱

소송수행자 마삼호, 정보경, 이철효, 이덕주, 강한영, 한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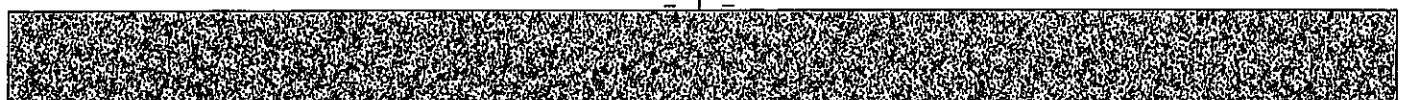
오상준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11. 20. 선고 2014누2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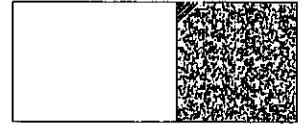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은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은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상금은 원고 소속 종업원들이 원고의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에 따라 원고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등을 승계하여 주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시보상금인데, 원고가 그 내부규정인 지적재산권관리요령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정당한 보상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이 규칙적, 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원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상금과 달리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이 사건 보상금과 그 산정방법을 일부 공유하였으나 그 지급근거와 지급대상, 지급취지 등이 전혀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1)에서 정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득 구분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 또는 비과세요건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u>김 용 덕</u>	
	대법관	이인복	<u>이 인 복</u>	
	대법관	고영한	<u>고 영 한</u>	
주심	대법관	김소영	<u>김 소 영</u>	



정본입니다.

2015. 4. 23.

대법원

법원사무관 진승범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